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안)

(경주엑스포대공원 솔거미술관 카페솔거랑 운영)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엑스포사업단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안)

(경주엑스포대공원 솔거미술관 카페솔거랑 운영)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엑스포사업단(이하 ‘허가자’ 라고 한다)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수허가자’ 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이하 ‘본 허가서’)을 체결하고 이행한다.

제1장 일반조건

제1조(공유재산)

- ①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105 (솔거미술관 나동)
- ② 면 적 : 18㎡(솔거미술관 카페테리아)
- ③ 경주솔거미술관 관리위탁운영 위·수탁 협약기간 : 2026.1.1.~2027.12.31.(2년)
※ 허가면적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사용료 및 일반·특수조건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조(공유재산의 사용목적) ① 수허가자는 제1조에 명시된 공유재산을 카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며, 허가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허가자는 본 허가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권 외에는 다른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지 않는다.

제3조(사용기간) 본 허가서에 의한 사용기간은 2026년 0월 0일(이하 “사용허가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사용료) 사용료는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일금000원정(₩000원)으로 하며, 본 허가서 체결 시 허가자의 지정계좌(농협은행, 301-0360-8129-51,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① 첫째년도(1차년도) 사용료는 지정기한(낙찰일로부터 7일)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낙찰은 무효로 하고, 관계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허가자에게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2차년도 사용료부터는 허가자가 지정기한 기일 내에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허가자는 제2항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부과한다.
④ 허가자는 수허가자의 사용료 미납으로 독촉 1회, 체납고지 2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허가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 ① 허가자는 본 허가서의 이행 및 제세공과금, 시설손괴보수, 원상복구 등의 의무이행보증을 위하여 사용료(부가세포함)의 10/100(10%)에 해당하는 보증금 일금000원정(₩000원)을 사용시작일 전까지 허가자의 지정계좌(농협은행, 301-0360-8129-51,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현금 또는 사용종료일로부터 30일을 더한 일수를 기간으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 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현금 납부에 따른 발생이자도 허가자에게 귀속된다.

② 수허가자는 보증금에 대해 사용료,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과 원상복구 비용 등의 각종 비용의 지급으로 대체 사용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허가서가 종료되는 경우에 수허가자는 공유재산을 원상복구 및 명도(폐업신고확인서 포함)하여야 한다.

④ 수허가자의 귀책사유로 제비용(제세공과금)등의 납부 또는 원상복구 의무가 지체되는 경우 허가자는 그 상당액을 수허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임의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7조(영업시간 및 휴·폐업) ①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한다. 운영기간 중 영업시간은 경주엑스포대공원 상시개장의 개장 및 폐장 시간에 따른다. 단, 단축,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허가자와 수허가자가 별도 협의 및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허가자의 시설물의 보수, 홍수태풍을 비롯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허가자가 일시적으로 영업할 수 없을 경우 수허가자는 허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수허가자는 임의로 휴·폐업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에 허가자의 승인을 받아 일시 휴업할 수 있으나 휴업 등에 따른 영업기간 연장,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영업의 종류) ① 수허가자가 영업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수허가자는 영업개시 전 판매메뉴와 판매상품을 허가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수허가자는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3. 기타 시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허가자가 판단하는 메뉴나 상품은 판매할 수 없다.

② 영업행위는 반드시 허용된 위치 및 시설물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등록, 해당 영업인허가등은 수허가자의 부담으로 관할행정청 등으로부터 발급 받아 사본 1부를 허가자에 제출하여야하며, 인허가에 따른 비용 및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

제9조(취급품목 및 판매가격의 결정) ① 허가자의 공유재산은 다수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로서 판매가격은 이용객이 가격에 대해 이의 제기가 없는 적정한 가격으로 허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수허가자는 판매가격 표시판을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수허가자는 판매가격과 관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허가자가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위생관리) ① 수허가자는 모든 판매품목을 신선한 것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무허가 불량품 또는 유통기간이 지난 품목을 판매할 수 없다.

② 수허가자는 영업에 있어 식품위생법 등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법규 미준수 및 위생불량 등으로 발생하는 위반·불이행에 따른 처분 등 조치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1조(제세비용 및 필요비용 부담) 수허가자는 영업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 및 그 밖의 제세공과금과 영업에 따른 필요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제12조(보험가입) ① 수허가자는 영업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등 필요 보험을 수허가자 부담으로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을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자 소유 시설물, 집기, 비품에 대한 화재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해서는 제1항과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허가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3조(시설물유지관리) ① 수허가자는 그 직원, 피용인, 기타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사용인과 내방객이 공유재산 및 공용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본 사용허가 시설물의 취급상품은 수허가자의 책임하에 보관·관리하고, 화재, 도난 등으로 인한 손실금액에 대하여 수허가자는 허가자에 청구하지 못하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허가자의 책임으로 조치한다.

③ 시설물 및 주변에 대해서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쓰레기, 오물 등은 허가자의 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허가자는 상품 진열·자재 적치·광고물 설치로 인해 경주엑스포대공원 상시개장에 장애를 주거나 이용객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공공시설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수허가자는 허가면적 외 공유면적에 대해 불법으로 무단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허가자의 허가에 의해 사용 할 수 있으며, 공유면적에 대한 행정지시 사항이 있을 시 수허가자는 허가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수허가자는 사용공간의 사용과 관련된 허가자의 모든 관계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공유재산의 사용, 관리에 관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추가시설의 설치 및 수선) ① 수허가자는 허가자의 사전 승인 없이 추가시설(천막, 매장 내외부 구조변경 등 포함)을 설치하거나 수선 등을 할 수 없다.

② 수허가자가 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추가시설, 시설물의 원형변경 등은 허가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집기, 소모품, 비품 등은 수허가자가 준비해야 하며, 허가사용기간 만료시 시설 내에서 수허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④ 허가사용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수리, 소모품 교환, 운영비용 등 지출은 수허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장 특수조건

제1조(수허가자의 의무) ① 수허가자는 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허가재산에서의 유기행위 및 유해음식 판매 등을 할 수 없고 무단으로 휴·폐업을 할 수 없으며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허가자는 근무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이용객들에 대해 친절한 자세로 응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수허가자는 종업원의 농성·파업 등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대체인력 투입 등 필요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운영기간 중 수허가자가 보관·관리하는 재산이 도난당한 경우, 수허가자는 이를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허가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수허가자는 카페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에 의거 운영 전까지 관할 행정 기관에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⑥ 수허가자는 운영에 필요한 제반법규와 허가자의 사용허가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관청의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 등에 대한 업무 일체는 수허가자의 명의 및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⑦ 시설의 안전 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자는 수허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허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조(미술관 유지관리에 따른 이의제기 금지) 수허가자는 미술관 유지관리(시설물 유지 보수공사)와 전시 준비,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 시 허가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반환의무) ① 수허가자는 사용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영업장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허가자는 영업 상 추가 설치한 시설 및 원형을 변경한 시설물을 원상복구 후 반환 하여야 한다. 수허가자가 영업 상 필요에 의하여 반입한 비품, 집기, 소모품 등은 허가사용 기간 만료 시 되가져 가야 한다.

③ 허가사용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설, 집기, 비품 등을 반출하지 않을 경우 수 허가자가 이를 무상으로 허가자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며, 허가자가 그 시설물(고정시설, 집기, 비품)의 소유권을 취득, 임의 처분하여도 수허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허가 취소·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본 허가서의 효력이 끝난 후 수허가자가 운영 장소를 허가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 동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사용료의 120%)을 납부하여야한다.

제4조(연고권 불인정) 수허가자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연고권(권리금 등)을 주장 할 수 없으며 허가자는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① 허가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으로 수허가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수허가자는 그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② 허가자는 수허가자가 배치한 근무자의 관련법령 또는 허가조건 위반사항 발생 시 근무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허가자는 즉시 조치 후 결과를 허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반·불이행에 따른 처분 등 조치) ① 허가자는 수허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위반·불이행에 따른 필요한 처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7조(영업시간 및 휴·폐업)를 위반한 때
2. 일반조건 제11조(제세비용 및 필요비용 부담)를 미이행한 때
4. 일반조건 제12조(보험가입)를 미이행한 때
5. 일반조건 제13조(시설물유지관리)를 미준수한 때
6. 특수조건 제1조(수허가자의 의무) 각 호를 위반한 때
7. 특수조건 제2조(미술관 유지관리에 따른 이의제기 금지)를 위반한 때
8. 특수조건 제5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관리감독)를 미이행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반·불이행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위반 횟수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적용한다.

위반·불이행 회수별 처분등 조치 내용			
1차	2차	3차	4차
주의 및 시정조치	경고 및 시정조치	허가기간 30일 단축	사용허가 취소

③ 허가자가 제1항에 따라 위반·불이행에 따른 처분 등 조치를 하였음에도 수허가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하지 않는 경우 허가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허가기간 30일 단축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30일이 단축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허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기간 단축 또는 허가취소에 대해 허가자는 수허가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아니하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따른 3차 및 4차 조치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취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공공목적 및 부득이한 경우 허가자는 사전에 수허가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 하는 사용료는 일수 계산하여 반환한다. 단, 허가자의 요청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수허가자가 본 허가서의 각 조항에 정한 사항을 위배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허가자가 수허가자에게 시정토록 통지한 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사용허가 취소 시점은 다음과 같다.

1. 허가자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시설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시설을 임의로 설치하였을 때.
2. 수허가자가 영업시설 운영을 제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운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전대, 양도한 때.
3. 수허가자가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영업시설을 운영을 할 수 없을 때.
4. 수허가자가 식품위생법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여 정상운영이 불가능 할 때.
5. 수허가자가 허가자가 지정한 영업장소를 위반하여 타 장소에서 영업하였을 때.
6. 수허가자가 임의로 영업시간 단축 및 연장, 휴업 또는 폐업할 때.
7. 일반조건 제8조에서 규정한 영업의 종류를 임의로 변경 또는 위반하였을 때.
8. 수허가자가 일반·특수조건을 위반하여 허가자로 부터 시정촉구를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9. 수허가자의 영업 행위 등에 관해 심각한 민원이 야기 되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수허가자가 본 허가서의 일반·특수조건 위반으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되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허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① 수허가자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요청 문서를 허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허가자의 사용허가 취소 요청에 대해 허가자는 수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용할 경우 사용허가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일반·특수 조건의 변경) 사용기간 중이라도 허가자와 수허가자가 합의 하여 일반·특수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수허가자 신분변경에 관한 조치) ① 수허가자의 상업등기사항 또는 신분상에 중요한 변경(상호, 주소, 법인의 경우 대표자변경이나 인수합병이나 포괄적 양수도 등)이 있을 때에는 수허가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허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허가자는 상업등기사항 및 신분상에 주요한 변경(상호, 주소,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이나 인수합병이나 포괄적 양수도 등)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허가서와 발생한 모든 내용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공유재산 사용관련 인·허가 사항) 수허가자는 사용기간 동안 공유재산의 사용 용도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모든 허가, 인가, 등록 및 승인 등은 수허가자의 비용으로 취득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불가항력) ① 허가자와 수허가자는 천재지변, 전쟁, 소동,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 또는 허가자와 수허가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허가자와 수허가자 및 공유재산 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불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본 허가서에 따라 이미 발생한 수허가자의 지급의무의 이행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한다.

제14조(제소전 화해) ① 수허가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제소전 화해조서 성립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제소전 화해의 피신청자인 수허가자가 부담한다.

1. 피신청인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청인에게 본 공유 재산을 즉시 인도한다.

2. 피신청인은 시설물을 신청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한 후 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인도시점 이후 원상복구 의무 및 인도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 및 인도 완료 시점까지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은 본 공유재산 명도 시 종전 운영에 따른 일체의 사용료 및 부과금을 정산 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행보증금(이행보증증권)에서 공제한다.

4. 피신청인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10일 이후까지 공유 재산 내에 있는 피신청인의 물품 등을 스스로 거두지 아니한 경우 그 소유권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엑스포사업팀에 귀속된다. 이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피신청인은 카페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에 관한 일체의 비용상환청구권, 권리금 등을 신청인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6. 화해 비용은 변호사 위임 수수료를 제외한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② 허가자는 제1항에서 정한 제소전 화해조서가 수허가자의 화해기일 법원 불참석 등 수허가자의 책임으로 인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본 허가서의 해석 및 관할법원) ① 본 허가서에 정한 이외의 사항이 있거나 또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허가자와 수허가자의 합의된 의사에 따르고, 허가자와 수허가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따른다. 관련 법령의 해석은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 해석에 따른다.

② 본 허가서에 관한 분쟁의 관할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 한다.

제16조(본 허가서의 효력) ① 본 허가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허가자와 수허가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며,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② 본 허가서의 내용은 허가자와 수허가자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및 수정은 허가자와 수허가자가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기타) ① 허가자와 수허가자는 전화번호변경, 주소변경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주엑스포대공원 상시개장 관람객 및 개장일수(개장시간 포함) 증감 또는 각종 공사에 따른 이용객 불편사항 등과 사용료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수허가자는 이와 관련하여 허가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권리주장을 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등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천재지변으로 손해발생시 수허가자는 허가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하지 못한다.

④ 본 허가서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허가서 체결 시 입찰공고문 및 허가서 일반·특수 조건에 의하고 기타 이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례에 의한다.

제18조(별지서식, 별첨) 본 허가서에 의거하여 별지서식, 별첨된 자료는 다음 각 항과 같으며, 이는 본 허가서에 포함된다.

① 별지 목록

- 별지서식 1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 별지서식 2 : 각서
- 별지서식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서식 4 : 원상반환이행확약서
- 별지서식 5 : 시설투자 등에 대한 권리포기서
- 별지서식 6 : 청렴서약서
- 별지서식 7 : 사용허가조건 숙지 및 이행서약서
- 별지서식 8 : 제소전 화해 성립을 위한 이행각서
- 별지서식 9 : 사용인감계
- 별지서식 10 : 카페술거랑 비품현황

② 별첨 목록

- 별첨 1 : 입찰공고문

③ 제출 목록

- 별첨 1 : 수허가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별첨 2 : 수허가자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별첨 3 : 수허가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별첨 4 : 수허가자의 신분증 사본
- 별첨 5 : 수허가자의 은행계좌정보

허가자와 수허가자는 본 허가서를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본 허가서의 일반 및 특수조건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본 허가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허가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허가자

상 호 명: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주 소: 경상북도 경주시 경감로 614

사 장: 김 남 일 (인)

수허가자

상 호 명: 카페 솔거랑

주 소:

성 명: (인)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 공유재산의 표시

-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105
- 매장위치 : 술거미술관 나동(카페술거랑)
- 시설명 : 카페
- 시설면적 : 18 m^2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각 서

□ 시 설 명 : 술거미술관 카페술거랑

-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105 (술거미술관 나동)
- 사용면적 : 18㎡

□ 사용기간 : 사용허가일 ~ 2027. 12. 31.

술거미술관 카페술거랑(이하 “카페술거랑”이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카페술거랑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술거미술관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하등의 이의 없이 사용허가 재산을 반납한다.
3.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다.
4. 사용료, 계약보험증권, 공공요금 등은 정해진 날짜까지 납부한다.
5.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영업장소 원상복구 후 반환하여야 한다.

이상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2026년 월 일

수허가자 성명
주소

(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공유재산[경주엑스포대공원 솔거미술관 카페솔거랑]
사용·수익허가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자 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본 동의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문서보존기간에 의함

4. 동의 거부권리와 그에 따른 불이익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셨을
경우에는 본 허가서에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2026. . .

성명 :

(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원상반환 이행확약서

수허가자 :

주소 :

1. 재산내역: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105 (솔거미술관 나동) 시설 및 부지
2. 사용목적: 카페솔거랑 운영
3. 재산면적: 18m²

상기 본인(사)은 상기 표시 재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본 허가서의 모든 조항을 응낙하고 준수·이행하겠으며, 만약 이를 준수·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기간 중이라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요구 시 허가 받은 공유재산을 원상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함은 물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본인(사)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수허가자 :

(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시설투자 등에 대한 권리포기서

수허가자 :

주소 :

상기 본인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공유재산 [솔거미술관 카페솔거랑] 사용 수익허가 허가서 등에 따라 차후 당해 사용기간 만료 시 어떠한 사유로도 당해 사업에 대한 유익비나 권리금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이에 시설투자 등에 대한 권리포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청 렬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허가서(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허가서(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어길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사용허가 취소 등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익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 공사에서는 청렴한 계약환경 조성을 위해 'GCTO 클린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부조리·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GCTO 클린상담센터로 상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① 이메일 신고 clean@gtc.co.kr

② 전화 신고 054-740-7345(반부패·청렴 담당자)



사용허가조건 숙지 및 이행서약서

본인(사)은 술거미술관 카페술거랑 에서 시행하는 공유재산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사용허가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인이 감수하겠습니다.

아울러, 술거미술관 카페술거랑 의 허가조건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위와 같이 서약합니다.

서 약 자 주소

성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제소전 화해 성립을 위한 이행각서

□ 대상 공유재산

○ 술거미술관 카페술거랑

□ 이행내용

○○○(이하 “본인(사)”)는 제소전 성립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동의하며, 향후 본 합의 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사)는 술거미술관 카페술거랑(이하 “카페술거랑”)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 본인(사)는 사용허가조건의 빠른 이행을 위해 카페술거랑이 직접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는 것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이를 위해 본래 본사가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 납부와 화해기일 법원 참석 등의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만일 본인(사)의 화해기일 법원 불참석 등 본사의 책임으로 인해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조건 특수조건 제10조에 해당되어 허가 취소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상 호 : (법인번호 :)

대표자 : (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사 용 인 감 계

개인(법인) 인감	사용 인감

본인(사)은 위 인감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카페
솔거랑 운영)를 위한 본 허가서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사용
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
(사)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감 날인)

「카페솔거랑 비품현황」

연번	품목	수량	비고
1	에스프레소 머신	1대	
2	그라인더(자동)	1대	
3	그라인더(수동)	1대	
4	핫워터디스펜스	1대	
5	제빙기	1대	
6	냉장+냉동 테이블 냉장고	1대	
7	오븐	1대	
8	베이커리 쇼케이스	1대	
9	음료 냉장고	1대	
10	전자레인지	1대	
11	진동벨	1set	
12	식기 건조대 2단	1대	